

#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김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장  
jgkim@kiep.go.kr

**나승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전략팀 전문연구원  
skna@kiep.go.kr

**이재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jhlee@kiep.go.kr

**윤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chyun@kiep.go.kr

**김은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전략팀 전문연구원  
emkim@kiep.go.kr



##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 부록

## 주요 내용

- ▶ 최근 신남방지역(아세안 10개국 및 인도)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성장세가 뚜렷함.
  -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사회 활동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
  - △전자상거래 △공유경제(차량 및 승차공유, 음식배달 등) △교육 △헬스케어 △핀테크는 향후 핵심적인 성장 영역이 될 전망
- ▶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및 제도 여건은 빠른 속도로 변화 중
  - 신남방지역 국가들은 법제도 및 인프라 개선,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정책을 추진 중
  -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 규제라고 할 수 있는 투자제도,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 현지화, 온라인 판매 관련 규제는 국별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도입 또는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음.
  -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교육, 콘텐츠 등 분야는 분야별 규제를 별도로 받는 경우가 많으며, 그 역시 변화하는 과정에 있음.
- ▶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진출 지원을 위해 신남방지역의 규범적 자유화와 더불어,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역량 강화 협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신남방지역의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영역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진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 동남아시아 및 인도와의 규범 조화 및 협력의 기초로서 디지털 통상정책이 중요, 규범 개선과 더불어 제도 및 표준 수립, 인프라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신남방지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 디지털 전환의 중요한 주체로서, 향후 세계경제를 주도할 혁신은 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게서 창출될 가능성이 높음.
  - 플랫폼을 “참여자들이 상호작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도록 촉진하는 중재자”로 정의
  - 성공한 온라인 플랫폼은 대부분 아주 작은 시장 또는 영역에서 출발한 스타트업들에 의해 시작되었던 바, 본 연구는 작은 영역에서 시작하는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장 가능성에 초점
  - 다만 엄격한 정의에 부합하는 온라인 플랫폼만을 선별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유용하지도 않다고 판단, 보다 넓은 범위에서 시장 및 기업, 정책 분석을 수행
- 본 연구는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수준과 성장영역,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관련 제도와 정책, 그리고 미국, 중국, 호주의 대(對)신남방지역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및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 최근 신남방지역(아세안 10개국 및 인도)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성장세가 뚜렷함.
  -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sup>1)</sup>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사회 활동(전자상거래,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교육, 콘텐츠 등)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전망

## 2. 조사 및 분석 결과

### 1) 시장 현황과 주요 영역<sup>2)</sup>

#### ① 동남아시아

- 동남아시아는 빠른 경제성장, 높은 젊은 인구의 비중, 인터넷 및 모바일 인프라의 빠른 확충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
  - 아세안 시장은 2010~18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5.4%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상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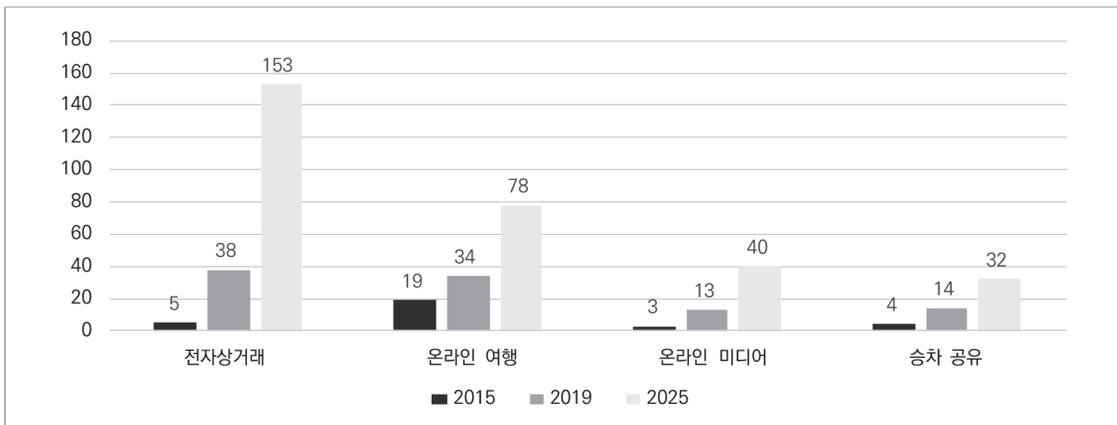
1) 김정곤 외(2019),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방안』 참고.

2) 상세 출처는 본 보고서 참고.

- 으로 젊은 층의 인구 비중이 높아 디지털 분야에서도 빠른 성장이 기대
- 최근 인터넷 및 모바일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2015년 2억 6,000만 명으로 추산되던 인터넷 이용자 수가 2019년 현재 3억 1,000명으로 확대되는 등 지역 전반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
    - 아세안 10개국의 인구 100명 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2008년 대비 2018년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소 2배 이상의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4G 이동통신 보급률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2014년 대비 2018년 큰 폭으로 증가
  - 2019년 현재 6개국의 인터넷 경제규모는 약 98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2015년도 추정치인 310억 달러의 세 배가 넘는 규모(Google-Temasek 2019)
    - 동남아 6개국의 인터넷 시장규모가 2025년이면 약 3,0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연평균 성장률로는 20.8%에 이르는 증가세
    - 한편 인터넷 경제의 주요 분야인 온라인 여행, 온라인 미디어, 승차공유, 전자상거래 등 4개 영역 가운데, 특히 전자상거래 시장이 2019년 380억 달러에서 2025년 1,530억 달러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전망

그림 1. 동남아 주요 6개국의 분야별 인터넷 경제규모

(단위: 십억 달러)



자료: Google-Temasek(2019), "e-conomy 2019," p. 19.

- 동남아시아는 전자상거래, 승차공유 분야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OTT, 디지털 금융, 보건의료,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기회요인이 상존
  - 동남아시아는 소득 확대 및 도시인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가계 단위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
    - 동남아시아 6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5~19년간 연평균 66% 성장했으며, 인도네시아의 토크opedia(Tokopedia), 싱가포르의 라자다(Lazada), 쇼피(Shopee) 등 역내 플랫폼이 시장을 주도

- 다양한 형태의 공유경제 기반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아세안 지역 내 유니콘 기업 1위, 2위인 그랩(Grab)과 고젝(Gojek)을 필두로 승차공유 분야가 빠른 성장세를 보임.
  - 이들 플랫폼은 특히 최근 여객운송 기반의 전통적인 승차공유 부문에서의 성과를 기반으로 음식 배달, 결제 분야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을 도모
- 동남아시아 내 콘텐츠 소비 확대에 따라, OTT 등 온라인 미디어 분야 또한 빠르게 성장할 전망
  - 동남아시아 OTT 시장에서는 넷플릭스가 전체 시장의 약 30%를 점유하는 등 1위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아이플릭스(iFlix), 후크(Hooq), 뷰(Viu) 등 현지 플랫폼 또한 상당한 비중을 차지
  - 다만 동남아시아 OTT 플랫폼은 경쟁 심화 및 소비자들의 낮은 지불의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에 따라 후크는 2020년 3월 청산을 신청, 아이플릭스는 2020년 6월에 중국의 텐센트에 인수
- 현재 상대적으로 그 비중은 크지 않으나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디지털 금융, 보건의료, 교육 서비스 분야 등임.
  - 아세안 지역 내 핀테크 분야의 벤처캐피탈 투자규모는 2015년 1억 3,000만 달러에서 2019년 40억 9,000만 달러로 크게 성장하였으며, KPMG(2019)가 발표한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에 싱가포르의 그랩(2위), 인도네시아의 고젝(4위)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의 10개 업체가 포함
  - 또한 아세안에서는 헬스케어 서비스, 약학, 바이오기술, 헬스케어 IT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벤처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원격진료, AI 기술 등을 적용한 의료 플랫폼 등 스마트 헬스케어 부문이 주목받고 있음.
  - 동남아시아 교육서비스 시장은 규모나 경쟁력 측면에서 뒤처져 있으나, 지난 5년간 아세안 지역의 에듀테크 분야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규모가 4억 8,000만 달러에 이르는 등 향후 성장가능성 측면에서 교육 및 에듀테크(EduTech) 분야의 성장 잠재력은 높게 평가됨.<sup>3)</sup>

## ② 인도

### ● 인도의 디지털 전환은 최근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

- 100명 당 스마트폰 이용자 수는 2014년 5.5명에서 2018년 26.2명으로 다섯 배 가까이 확대되었으며, 같은 기간 1인당 월평균 모바일 데이터 이용량은 0.09GB에서 8.30GB로 90배 이상 확대
  -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저조한 수준이나, 인터넷 보급률에 비해 높은 수준의 1인당 모바일 데이터 이용량을 감안하면 인도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큰 것으로 평가
- 디지털 홍채 인증시스템인 아드하르(Aadhaar) 기반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3) Holon IQ(2020), "Southeast ASIA EdTech - \$480M of VC in 5 years," <https://www.holoniq.com/notes/southeast-asia-edtech-480m-venture-capital-5-years/>(검색일: 2020. 5. 19).

- 인도 최대 이동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Reliance Jio)의 성공적인 LTE(4G) 서비스 상용화 역시 인도경제의 디지털화 가속화에 크게 기여
- 풍부한 밀레니얼 인구(전체 인구의 약 34%)가 전자상거래, 엔터테인먼트, 보건의료 및 교육 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서 핵심 소비층으로 자리 잡음.

표 1. 인도 디지털 전환 추이 및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구분	인도		선진국	
	2014년	2018년	국가	2017년
100명당 스마트폰 이용자 수	5.5	26.2	스웨덴	95.8
1인당 월평균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GB)	0.09	8.30	핀란드	15.50
평균 모바일 다운로드 속도(Mbps)	1.3	9.9	캐나다	59.6 <sup>a</sup>
100명당 모바일 브로드밴드 구독자 수	5.4	34.3	싱가포르	144.4
100명당 고정 브로드밴드 구독자 수*	1.2	1.4	프랑스	42.4 <sup>b</sup>
1인당 연간 비(非)현금 거래 횟수	2.2	18.0	싱가포르	802.7

주: \*모바일 브로드밴드 제외. a. 2018년 기준, b. 2016년 기준.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2019), *Digital India: Technology to transform a connected nation*, p. 37.

● **중산층의 소득증가, 여성 인터넷 사용 증가,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 자란 5억여 명의 디지털 원주민 Z세대가 경제주체로 부상, 그리고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전환은 가속화될 전망**

- 향후 10년래 인도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sup>4)</sup>
  - 특히 현지어 서비스의 확대, 스마트폰 및 신용카드 사용자의 증가, 전자결제시스템 확대 등은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
- 디지털콘텐츠 시장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지역 확대, 데이터 이용료 인하, 디지털미디어에서만 접할 수 있는 콘텐츠 증가 추세, 그리고 코로나19를 계기로 빠른 성장 중
  - 2022/23년 인도의 OTT 구독자 수는 5억 5,000만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시장규모는 5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임.<sup>5)</sup> 특히 2018/19년 기준 약 30%에 불과한 SVOD 비중이 연평균 44.0%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2023/24년 약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디지털 금융서비스 시장의 확장세는 디지털 결제 시장을 중심으로 지속,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대안대출과 인슈어테크, 웰스테크 또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향후 성장이 특히 기대되는 분야는 의료부문과 농업, 그리고 교육부문임.
  - 소득증가와 더불어 질적 교육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에듀테크와 헬스테크

4) IBEF(2020), "E-commerce(March 2020)," p. 7; Bain & Company(2015), "Adding to cart: digital's impact on consumer goods in India," p. 6.

5) KPMG(2018), "Media ecosystems: The walls fall down," p. 9; BCG(2018), "Entertainment Goes Online: a \$5 billion opportunity," p. 19.

부문에 이미 연간 천여 개의 스타트업들이 신규 진출, 최근에는 아마존, 릴라이언스 리테일 등의 거대기업들까지 헬스테크 시장에 진출하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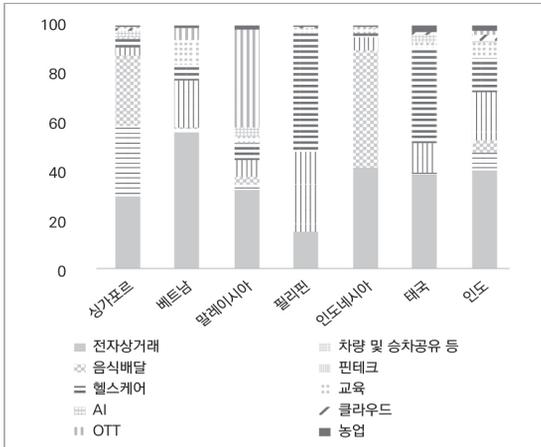
- 애그테크 시장은 아직 스타트업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 소비자 직거래 플랫폼이나 농자재 구입 플랫폼과 같이 공급망(supply chain) 플랫폼에 국한되어 있는 만큼 성장 기회가 매우 큰 것으로 전망

### ③ 기업 현황과 성장 영역

●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관련 유망 분야는 △전자상거래 △공유경제(차량·승차공유, 음식배달 등) △교육 △헬스케어 △핀테크로 꼽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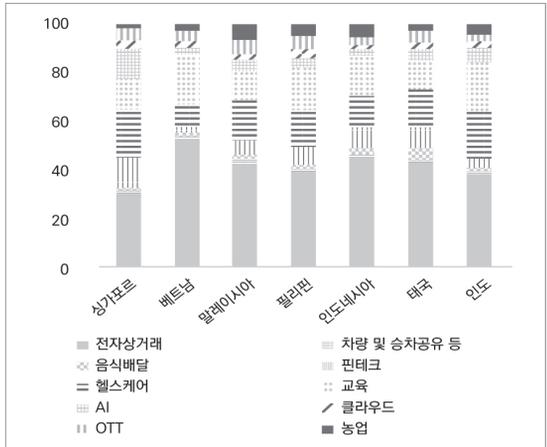
- 선행연구<sup>6)</sup>와 크런치베이스(Crunchbase) 사의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아세안 6개국<sup>7)</sup>과 인도에서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 중인 10개 분야<sup>8)</sup>를 선정한 후 분야별·국가별 기업 현황과 특징을 분석
  - 대규모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는 분야(전자상거래, 공유경제, OTT, 핀테크)이거나 기업 수가 많은 분야(전자상거래, 교육, 헬스케어)의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아래 그림 참고)
- 또한 국별 시장 현황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으면서 현지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분야와의 접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5대 유망 분야로 △전자상거래 △공유경제(차량 및 승차공유, 음식배달 등) △교육 △헬스케어 △핀테크를 도출함.

그림 2. 신남방 국가별 온라인 플랫폼 관련 기업 편성 비중 (단위: %)



주: 데이터베이스 특성상 기업/스타트업이 2개 이상의 분야를 표기한 경우가 많아 일부 기업은 중복 반영됨.  
자료: Crunchbase Data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6).

그림 3. 신남방 국가별 온라인 플랫폼 관련 기업/스타트업 수 비중 (단위: %)



주: 데이터베이스 특성상 기업/스타트업이 2개 이상의 분야를 표기한 경우가 많아 일부 기업은 중복 반영됨.  
자료: Crunchbase Data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6).

6) NASSCOM(2019), "Indian Tech Start-up Ecosystem - Leading Tech in the 20s," p. 1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6).  
7)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8) ① 전자상거래 ② 차량 및 승차공유 ③ 음식배달 ④ 핀테크 ⑤ 헬스케어 ⑥ 교육 ⑦ 인공지능(AI) ⑧ 클라우드 ⑨ OTT ⑩ 농업.

## 2) 온라인 플랫폼 관련 주요 제도<sup>9)</sup>

### ① 외국인 투자<sup>10)</sup>

#### ● [동남아시아] 다수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온라인 플랫폼과 연관된 분야에서 다양한 외국인 투자규제 정책을 유지

-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다양한 통신 분야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보유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부문을 보다 엄격히 제한
- 한편 통신법, 사이버보안법, 투자법상에서 투자증서 취득,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투자심사 단계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마련
-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광고서비스,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현지 대리인을 두거나 별도의 합작법인을 설립하도록 하는 등의 요건을 부과
-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 기존의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
- 그밖에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설비 보유를 제한하는 경우나 관련 규제 제정 등에 있어서 불투명성 문제 또한 나타남.

#### ● [인도] 인도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으며, 통신 및 미디어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정책을 유지

- 인도의 경우 디지털 뉴스 미디어 분야는 26% 이하, FM 라디오 및 뉴스 채널의 경우는 49% 이하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보유를 제한
- 통신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지분이 49%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의 별도 승인이 필요

### ② 데이터<sup>11)</sup>

#### ●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주요국은 대부분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만간 도입할 예정에 있으며, 태국을 제외하면 프라이버시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어 데이터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도입

-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는 모두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일정 수준 운용
  - 다만 수준과 내용에는 차이가 있는데, 베트남은 데이터 저장 설비를 자국 내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데이터 현지화 규정을 도입하고 있음. 반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EU와 유사한 방식으로 일정 조건하에서 국경간 데이터 이전을 허용하며, 필리핀 역시 유사한 방식

9) 이하 내용의 관련 법령은 본 보고서를 참고.

10) 부표 1 참고.

11) 부표 2 참고.

의 규정을 도입

- 인도네시아는 분야별 데이터 현지화 규정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한 민간 서비스 공급자로 하여금 국경 내 데이터를 저장할 의무를 철폐

● [인도]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을 도입하는 단계에 있으며, 프라이버시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등 데이터 법제도의 골격을 대폭적으로 수정하고 있음.

- 데이터의 국외 이전에 대해서는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음.
  -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은 데이터 현지화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정보에 대해서도 국외 이전을 제한
  - 인도정부는 자국민 데이터를 자국을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으로서, 이러한 방향성은 향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 ③ 플랫폼 책임에 대한 면책 규정

● [동남아시아]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에 대한 세이프 하버 규정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도입하고 있으며, 그 밖의 주요 동남아 국가들은 관련법을 도입하지 않고 있음.

- 싱가포르는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관련된 세이프 하버 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의 FTA 협정으로부터 기인한 것임.
- 말레이시아 역시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과 유사한 세이프 하버 조항을 포함
- 인도네시아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ISP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지 않음.
- 베트남은 정보시스템 관리자, 통신·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관할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 콘텐츠를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제공자는 정부 당국의 통보를 받은 후 24시간 안에 콘텐츠를 삭제해야 함.

● [인도] 인도는 세이프 하버 규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2018년 중개자 가이드라인안(Draft Intermediary Guideline)을 제시함.

### ④ 콘텐츠 규제

● [동남아시아] 플랫폼상의 콘텐츠에 대해 일정 수준 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국가별로 특수한 정치사회적 조건이 반영된 경우가 많아 유의할 필요

- 베트남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로 하여금 국가와 협력하여 금지된 행위를 포함하는 정보를 제거 또는 차단할 의무를 규정
  - 또한 소셜네트워크에 베트남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가 게시되지 않도록 의무화

- 태국정부는 왕국의 보안, 공공질서와 도덕에 영향을 주거나, 형사법에 따른 다른 범죄들, 예를 들어 왕실모독죄에 해당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음.

- [인도] 인도정부는 857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 바 있는데,<sup>12)</sup> 이러한 조치는 정치적 불안 요소에 대한 정부의 대응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sup>13)</sup>

## ⑤ 온라인 판매

- [동남아시아] 온라인 결제, DNS(Domain Name System) 등록요건을 중심으로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다양한 규제 제도를 운영

- 다수의 국가들이 온라인 결제와 관련한 규제로 결제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진입제한, 결제 서비스 시장의 독점화, 암호화폐의 사용 제한 등을 규정
- 한편 베트남은 자국 내에서 암호화폐는 ‘법적지급수단’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 등 유사한 가상화폐를 발행·공급·사용하는 것을 금지
-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들 중 상당수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국 도메인 등록을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
-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브루나이와 싱가포르가 무관세 한도액(De Minimis)을 291달러로 가장 높게 책정
- 인도네시아의 경우 주류품목의 온라인 판매 및 광고가 금지되어 있으며, 도박과 관련한 자료의 온라인 배포를 금지하는 등 온라인 거래를 제한
- 아세안 내 상당수의 국가들은 신속배달, 택배 등 물류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별도 면허 취득요건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진입 요건을 다소 엄격하게 규정

- [인도] 온라인 결제 관련 규제 및 낮은 무관세 한도액 규정 등 온라인 판매 관련 규제를 유지
  - 인도는 2011년 온라인 결제대행 서비스를 통한 제품과 서비스의 수출 관련 결제를 제한하였으며, 2014년 인도 내에서 제품과 서비스 구매 시 신용카드의 온라인 거래가 반드시 자국 내에서 자국의 통화로 거래되도록 규정
  - 인도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면제 기준으로 약 1달러를 설정, 전자상거래 수입과 관련한 규제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12) Centre for Internet and Society(2015), “DOT Order Blocking 857 Websites on Grounds of Decency and Morality,” <https://cis-india.org/internet-governance/resources/dot-morality-block-order-2015-07-31/view>(검색일: 2020. 7. 21).

13) Indian Council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2018), pp. 3-9.

### 3) 주요 정책과 전망

#### ① 아세안

- 아세안은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간접적으로 규제·육성
  - 아세안의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은 2000년대 초 ‘e-아세안 프레임워크 협정’을 시작으로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청사진, 아세안 전자상거래 작업프로그램, 아세안 디지털 통합 프레임워크, 아세안 전자상거래 협약 등까지 다수 다자간 협정을 통해 제시됨.

표 2. 아세안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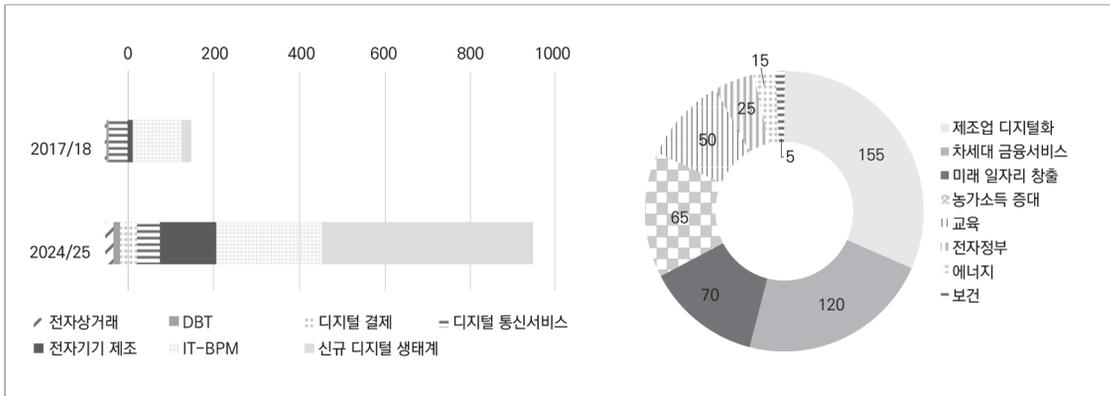
협약	e-아세안 프레임워크 협정	AEC 청사진	아세안 전자상거래 작업프로그램	아세안 디지털 통합 프레임워크	아세안 전자상거래 협약
주요 내용	e-Society 추진	AEC 이행 주요 과제	전자상거래 및 플랫폼 기업의 책임과 역할 지재권 협력	무역원활화 행동계획 2019~25	역내 전자 상거래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발표	2000년	2007년, 2015년	2017년	2018	2019

자료: 각 협정문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② 인도

-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인디아 프로그램을 주축으로 하여, 인도정부가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문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임.
  - 디지털 인프라는 광역통신망 구축을 비롯한 물리적인 디지털 기반 형성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 인프라 구축으로 나누어지며, 후자의 핵심이 되는 이니셔티브는 디지털 개인정보인증 플랫폼 아드하르 및 이와 연동된 각종 플랫폼, 통합결제인터페이스(UPI) 기반의 금융결제 플랫폼 등임.
- 한편 인도전자통신기술부는 5년 내 인도의 디지털 경제 창출 가능성을 1조 달러(GDP 대비 18~23%)로 전망하였으며, 여기에는 전자정부, 보건의료, 교육, 차세대 금융서비스, 제조업, 농업 등 분야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민관협력이 주축을 이룸.

그림 4. 인도의 디지털 경제 분야별 성장 전망



주: DBT는 Direct Benefit Transfer, IT-BPM은 IT-Business Process Management의 약자.  
 자료: MeitY(2019), "India's Trillion-Dollar Digital Opportunity," p. 26.

-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플랫폼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데이터 현지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 국가전자상거래정책(안)의 경우, 해외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해외 주요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및 네트워크 선점에 따른 후발주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신규 플랫폼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포함함.
  - 이러한 정책 방향은 기존 플랫폼 기업에는 장애요인이 되지만, 현지에서의 성장을 노리는 신규 기업 들에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4) 주요국의 대신남방지역 전략 · 정책

##### ① 미국

- **인도 · 태평양 전략하에서 디지털 경제는 3대 축의 하나로서, 동남아시아와 인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동남아시아]** 미국은 통상규범 동조화라는 기본 전략을 유지하고 있지만,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경제성장과 관련된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최근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동남아시아는 중국 플랫폼 기업과 정부의 영향력이 높은 지역으로서, 과거에 비해 동남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바,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미국의 관여 수준은 강화되는 추세
  - 미국은 일방적 규범적 자유화에서 다소간 탈피하여, 동남아시아 디지털 경제성장의 파트너로서 미국의 역할을 부각하기 위해 노력
    - 이는 중국이 민간 및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앞세워 동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현 상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디지털 연계성 및 사이버 안보 파트너십(DCCP)이나, 미국·아세안 스마트시티 파트너십(U.S.-ASEAN Smart Cities Partnership)은 동남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변화된 접근법을 보여줌.
- 동남아시아 각국의 상이한 제도 여건과 정치·사회적 특수성,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을 감안할 때, 미국이 동남아시아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
-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경제 일반, 그리고 그 주역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디지털 경제 규범의 자유화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중요한 선택지가 될 전망

● [인도] 인도와 중국의 정치·경제 관계가 소원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시각에서 인도는 시장으로서나 전략적인 측면에서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인도는 미국 플랫폼 기업의 시장으로서 중요성이 매우 높고, 연구개발, 인적 자원의 교류 측면에서도 미국은 인도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왔음.
-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온라인 플랫폼 측면에서 인도에 대한 통상압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인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할 유인이 높음.
-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인도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국이 인도에 대해서 EU와 유사한 형태의 정부간 데이터 협정을 추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판단됨.

② 일본

● 일본은 플랫폼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은 미국, 중국에 뒤처져 있으나, 2000년대부터 ICT 분야를 혁신의 주요 수단으로 주목하고 다양한 산업혁신전략을 추진 중

- 'ICT 성장전략(2013년 6월)', '스마트 일본 ICT 전략(2014년 5월 발표)', '로봇신전략(2015년 1월 발표)' 등 다양한 ICT 진흥정책을 제시
-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초점을 맞춘 산업혁신전략은 '일본재흥전략 2016' 으로부터 구체화
- 최근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를 나타내는 개념으로는 '소사이어티 5.0 (Society 5.0)'과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 등이 있음.

● [동남아시아] 정부 차원의 동남아 전략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우방으로서 역할 확립과 함께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측면 또한 중요

- 일본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여 '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를 제시하였으며, 2016년 'Expanded 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에 따라, 특히 ICT 인프라 분야에 대하여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ODA 및 민관협력 사업을 지원
- 일본은 미국의 TPP 탈퇴 이후 강화된 전자상거래 규범을 포함하는 CPTPP 체결을 주도하였으며,

2019년 G20 정상회의에서 'Data Free Flow with Trust(DFFT) Framework' 원칙을 포함하는 '오사카 트랙'을 제안

-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지하는 일본의 입장은 미국의 디지털 통상전략의 방향성과 맥을 같이 함.
- 일본은 현재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도 국경간 정보 이동 등 주요 디지털 이슈에서 일본의 방향성에 동의하는 국가들인 싱가포르, 필리핀 등과 우선적인 협력 강화에 주력

● [인도] 일본은 자국의 하드웨어와 인도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의 상호보완 가능성에 기초한 산업분야에서의 협력에 주력

- 2018년 5월 1일 일본·인도 간 스타트업 이니셔티브를 체결하고, 이를 다양한 디지털 분야로 확대·발전시킨 'Japan and India Agreement on Partnership in the Digital Industry'를 2018년 10월 29일에 체결
- 양국은 주요한 협력 분야로 일본·인도 스타트업 이니셔티브, 디지털 기업 파트너십(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 전자산업 생태계 구축(소프트웨어, 반도체 분야 설계 시스템 분야 등 협력), 디지털 분야 인적자원 활용, R&D 협력(AI 등 신기술), 차세대 네트워크 등 6개 분야를 선정

③ 중국

● 2010년대 중반부터 국가의 중장기 성장전략을 기반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을 추진하며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정책간 시너지 효과를 모색해 왔으며, 기업의 현지 진출도 활발한 상황임.

-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은 '인터넷 플러스(互联网+)' 및 '일대일로(一帶一路, 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전략을 근간으로 수립되었거나 이와 연계하여 추진돼 왔으며, 2018년부터 플랫폼 경제와 공유경제를 활성화할 것임을 강조함.
- 최근 정부업무보고(2020년)를 통해 신(新)인프라(5G, 데이터 센터 등) 관련 투자를 확대할 것임을 발표<sup>14)</sup>하는 등 플랫폼 경제를 강화하려는 중국의 정책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기업 차원에서도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신남방 국가의 스타트업·기업에 투자하거나 인수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현지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음.

● [동남아시아]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협력은 크게 '국경간 전자상거래, 정보 공유 및 협력 활성화'와 '기업간 교류·협력 지원'을 위해 추진되어 왔으며, 접경 지역(윈난성, 광시좡족자치구)을 중심으로 다자협력 모델을 발굴하며 자국기업의 현지진출을 도모해왔음.

- 양측 정부간 협력은 전자상거래 관련 MOU 체결 등을 통해 진행되어 왔으며, 다자 차원으로도 '중·

14) 国务院(2020), 「政府工作报告」, [http://www.gov.cn/premier/2020-05/29/content\\_5516072.htm](http://www.gov.cn/premier/2020-05/29/content_5516072.htm)(검색일: 2020. 5. 15).

메콩지역 GMS 국경간 전자상거래 협력 플랫폼(GMS跨境电子商务合作平台), '중·아세안 정보 네트워크(中国-东盟信息港)' 등을 구축함.

- 양측 기업간 대화와 협력의 장을 제공하고자 중·아세안 박람회의 부대행사로 '전자상거래 포럼' 등을 개최 중이며,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알리바바의 마윈(马云)이 2016년에 제안한 '세계전자무역플랫폼(eWTP)'<sup>15)</sup>이 꼽힘.

● [인도] 인도와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협력은 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각자의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국경분쟁 등의 영향으로 중국기업의 현지 활동이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 인도와는 'IT 회랑 프로젝트(中印IT走廊项目)' 등을 통해 중국 제조업 기업이 인도기업의 뛰어난 IT 기술력을 활용하고 인도기업에는 중국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도의 유망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음.
- 두 국가 모두 인구대국이자 신흥국으로서 견제와 협력을 반복해 왔으나, 최근 발생한 국경분쟁, 중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의 영향으로 대중국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

#### ④ 호주

● 호주는 자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자국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유망한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및 인도 등 해외진출에 관심이 높음.

- 이러한 배경하에 통상규범 및 기술표준 등의 측면에서 미국과 거의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동남아시아] 호주는 중국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견제하는 입장으로서, 동남아시아의 핵심 협력 대상국인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경제협정을 통해 동남아시아 디지털 경제 기반 구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함.

- 동남아시아 국가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강화하여 자국과 부합하는 사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호주정부의 궁극적인 목표
  - 통상규범 동조화는 물론, 기술 및 제도, 표준, 연구개발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
  - 호주 표준원의 주도하에 아세안의 역량을 강화하여 중장기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이 선진적인 디지털 기술표준을 도입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아세안·호주 디지털 무역 표준 협력 이니셔티브를 추진

15) 기업이 주도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가간 무역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출범한 이니셔티브로 중국에서는 항저우와 이우, 국외에서는 말레이시아, 벨기에, 르완다, 에티오피아 등이 참여 중임(2020년 7월 기준).

- 이는 규범 일변도의 접근에 비해 아세안의 현실에 더욱 부합하는 접근법이라고 판단됨.

● [인도] 호주는 자국의 경쟁력이 있거나 인도시장의 전망성이 높은 분야를 목표로 하여, 그 바탕이 되는 사이버 여건 구축을 중심으로 양자간 협력을 추진

- 인도경제전략(IES: An India Economic Strategy To 2035)을 바탕으로 자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교육, 금융, 의료보전 등의 분야와, 인도의 실질적인 기여가 기대되는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경제 전반의 진출·협력 전략을 추진

- 또한 호주·인도 사이버 및 사이버 기반 핵심 기술 협력에 관한 프레임워크 협정을 통해 개방화된 사이버 환경 구축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이버 안보 관련 연구개발 등 협력을 강화

- 이러한 전략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인도의 새로운 분야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밑그림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됨.

### 3. 정책 제언

#### 1) 신남방지역 진출·협력전략의 방향

##### ① 동남아시아

● 중국과 미국의 경쟁체제하에서, 한국은 중간자적 입장에서 동남아시아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최적의 전략이라고 판단됨.

-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역량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를 지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신성장 영역을 중심으로 진출 및 협력 기반을 구축

● 한국은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규범 자유화를 유도하되, 이에 동반하여 제도, 표준, 인적자원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디지털 기반 강화를 지원하는 데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한국은 동남아시아에 대해 규범적 자유화를 지나치게 앞세울 필요성이 전략적으로 높지 않으며, 중국과 같이 자본을 앞세운 협력을 추진하기에는 자원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

●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의 새로운 성장영역인 금융, 콘텐츠, 헬스케어, 교육 등에 대해서는 분야별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야 함.

## ② 인도

### ●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도시장의 성장성을 고려, 인도와의 디지털 경제·통상협정을 통해 논의의 선제적인 물꼬를 트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 한국의 경쟁력과 인도시장의 전망성이 높은 금융, 헬스케어, 교육 등 신영역을 진출 유망 분야로 설정하고, 동시에 그 기반 구축에 관련한 양자간 대화와 협력을 추진

- 또한 현재 인도가 필요로 하는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과 기반 기술 관련 연구개발 협력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2) 주요 정책과제

### ① 한국의 정책과 신남방지역 연계

#### ● 신남방지역은 디지털 뉴딜의 해외진출 측면에서 가장 인접한 유망 지역임.

- 디지털 뉴딜에서 세부과제로 제시된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전 산업에 걸친 5G 및 인공지능 융합, 디지털 교육 확산, 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은 모두 신남방지역에 대한 진출 또는 협력을 염두에 두고 신남방정책과 연계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 신남방지역의 유망 분야인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비즈니스, 콘텐츠, 금융, 의료, 교육 등은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영역으로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신남방지역 진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 정책 추진 시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희망하는 경제·사회의 질적 향상을 고려해야 함.

- 금융, 의료, 교육 등의 분야는 모두 신남방지역의 경제·사회적 수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공공재적 성격이 큰 영역들로서, 정부의 역할과 정부간 협력이 중요한 기반이 됨.
  - 즉 기업 차원의 사업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
- 아울러, 상기 영역은 규제 환경이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 특히 정부간 대화 채널과 기업에 대한 정보 공급이 중요함.

#### ● 온라인 플랫폼의 신남방지역 진출과 연계하여 디지털 통상정책은 매우 중요한 부분

- 동남아시아 및 인도와의 규범 조화 및 협력의 기초로서 디지털 통상정책이 중요하며, 규범 개선과 더불어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역량 강화 협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② 온라인 플랫폼 진출 지원

- **[분야별 맞춤형 지원]** 우리 기업의 신남방지역 진출 수요를 발굴하고 분야별로 상이한 애로사항을 해결해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
  - 신남방지역에 대한 정보 습득이 용이하도록 분야별로 한·신남방국가 간 교류의 장을 확대, 현지 기업과 기관의 한국 기업, 기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워크숍, 홍보 등을 추진
  - 서비스별로 각기 다른 해외진출 애로사항<sup>16)</sup>을 경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연구, 민관 대화 등을 통해 협력 수요를 발굴
- **[기업규모 및 투자기간을 고려한 지원사업 추진]** 사업별로 어떠한 규모나 성장 수준을 보유한 기업에 유용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명확히 하여 적합한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 지원대상 기업은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 대기업 및 연관 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것이나 기업이 성장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기업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현재 비대면 산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부처별 주요 사업들은 1년 이하의 단기 사업인 경우가 많으나 R&D와 같이 장기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기업의 기술수준 등을 고려한 단계별 사업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규제·정책여건 대응]** 규제적인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은 외국인 투자규제,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령, 국경간 데이터 이전 제한규제 등임.
  - **[외국인 투자]** 디지털 전환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를 새로운 산업영역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규제 관련 논의를 전개
  - **[개인정보보호]**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제도 인프라 구축 및 국가간 제도적 통일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사례와 같은 조건부 데이터 이전 허용 규정의 도입 가능성 등에 대하여 양자 혹은 다자 차원의 논의 전개
  - **[플랫폼 책임]** 국경간 거래 활성화 혹은 시장통합 가능성의 관점에서 규제 조화 논의 추진
  - **[기타]**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 금융·헬스케어·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양자간 협력 및 대화채널 확보 등

16) 본 연구진이 인터뷰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종사자는 해외 인증 취득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한 반면, 콘텐츠 플랫폼 기업 담당자의 경우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나 법적 대응이 어려워 정부 차원의 개선 요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

- [스타트업 진출] 정부 교류(G2G), 민간 교류(P2P)와 같은 직접적인 교류 확대와 정부의 민간지원(G2P)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을 병행하고, 각 교류 채널간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화 채널 운영

- [G2G] 정부 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유관부처 주도하에 신남방지역 국가들과 고위급 혹은 장관급 회의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정책 공조를 위한 정책대화를 지속
- [P2P] 민간 교류 증진의 경우 기업 차원의 협력수요 발굴이 가장 중요하지만 수요 발굴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도 병행할 필요
- [G2P] 국내에서 성장한 스타트업은 물론 신남방지역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스타트업의 현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기관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 ③ 디지털 경제 · 통상협상 추진

-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규제 자유화 및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 · 통상협정 추진

- 디지털 통상에 국한하면, 시장 확대 차원에서 CPTPP(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포함)에 참여할 필요성이 높음.
  - 아세안 10개국 모두 참여한 RCEP의 경우 전자상거래 챕터에 국경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 컴퓨팅 시설 현지화 금지와 같은 조항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개방 수준은 매우 낮음.
- 동남아시아 개별 국가로서 양자간 협정 추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만한 국가로는, 이미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 이외에,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이라고 판단됨.
  - 이들과는 개인정보보호 체제의 조화, 데이터 저장센터의 국경 내 설치와 같은 강한 수준의 데이터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 보호, 온라인 플랫폼 투자 제한 완화와 같은 규범적 자유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경험 공유, 공공 데이터 활용, 디지털 표준 협력, 금융, 의료, 교육 등 중점 협력 분야 개발, 공동 역량강화 사업, 스타트업 교류 등 양자 공통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임.
- 중장기적인 규제 조화 및 협력 강화 차원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병행할 필요
  - 아세안과의 협력 시 규범 자유화보다는 협력 이슈 및 투자여건 개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앞의 호주 사례 참고)

- 디지털 통상정책 측면에서 인도에 대한 선제적 고려 필요

- 인도는 미국, 중국을 제외하면 단일국가로서 데이터 자원의 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로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긴밀한 연계성을 고려할 때 인도와의 협력 채널 구축은 매우 중요
- 한·인도 CEPA 개정 협상 시 인도의 데이터 현지화와 각종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 제기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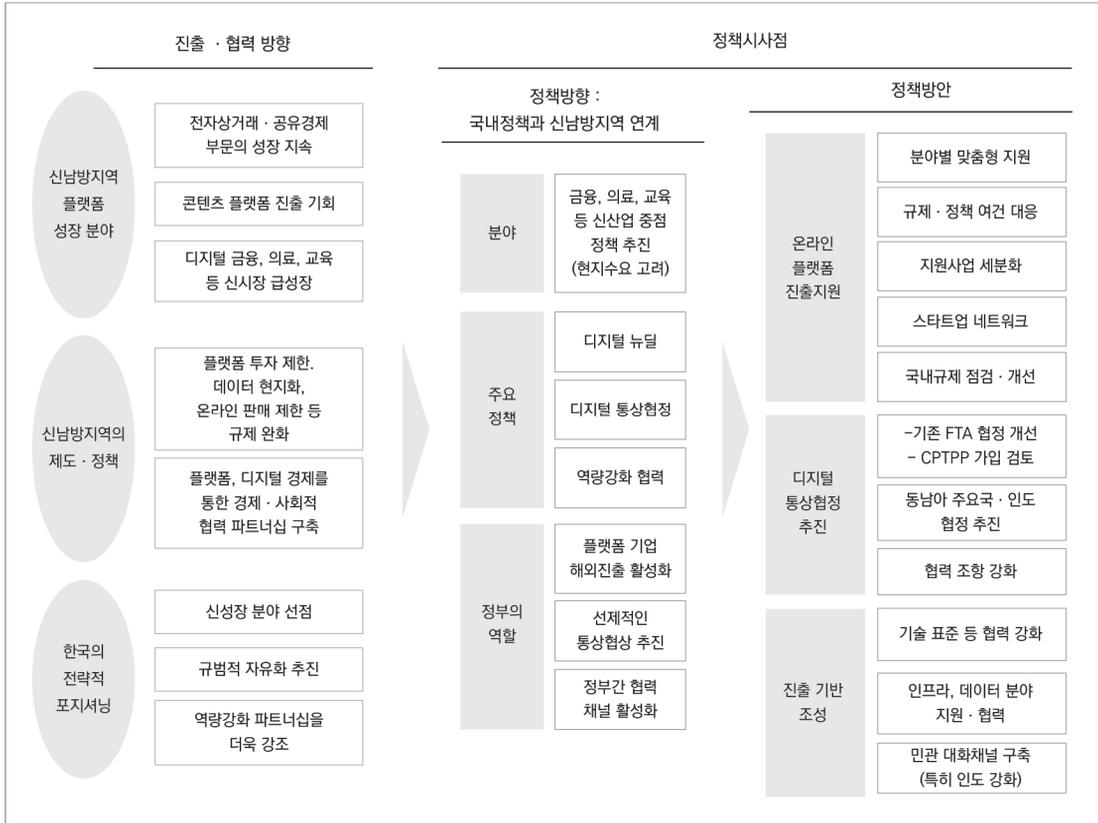
- 한·인도 CEPA와는 별도로 디지털 경제·통상협정을 추진하여 당장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선제적인 협력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
  - 동 협정으로 인도의 규범적 입장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양국의 제도 및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이슈를 발굴하기 위한 논의 채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
  - 중장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체제의 상호인정을 통해 양국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작업은 어렵지만 고려해볼 만한 과제
  - 또한 인도가 추진 중인 데이터 인프라 및 사이버 보안 체제 개선과정에 기여하고, 인도의 사회적 수요가 큰 금융, 교육, 헬스케어 등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 개선 및 협력사업 발굴

## ④ 온라인 플랫폼 진출을 위한 기반 조성

### ●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무역 관련 기술표준 협력 체계 구축·지원 △공공 분야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운용 관련 분야 지원·협력 촉진 △디지털 전환 관련 민관협력에 참여를 위한 한·인도 간 협력 채널 구축 등을 통해 진출 기반을 마련

- 호주·아세안 디지털 무역 표준 협력 이니셔티브 사례와 같이, 디지털 기술표준 등의 부분에서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국제사회에서 공통의 목소리를 내는 파트너 관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신남방지역은 일반적으로 공공 부문에서 진행되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정책적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관한 국가간 협력(예: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구축 및 공공 데이터 개방 경험 전수 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인도의 경우, 정부가 분야별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민관협력을 통해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양측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협력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한·인도 기업 간 협력 기회를 선제적으로 탐색해야 함.

그림 5.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진출·협력 방향과 정책방안



자료: 저자 작성.

## 부록

부표 1. 신남방지역 국가별 디지털 분야 주요 외국인 투자규제 비교

항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공통	-	민영화 마스터 플랜(1991) 프로젝트 25% 원칙	-	-	-	-	
	통신 서비스	-	Network Service Provider 및 Network Facilities Provides 70%,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100%	유선/이동통신 67%	네트워크 인프라 제공 유선통신 서비스 49%, 비인프라 통신업체 65%	1종 면허(인터넷 접속 서비스, 음성 텍스트 서비스, 공공교환통신 서비스 재판매) 외 전기통신사업 49%	유선/이동통신 40% (단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는 제한 없이 허용)	-
	미디어	방송서비스 49%	방송서비스 30%	TV/라디오 방송 20%	-	미디어 방송 서비스 49%	라디오 방송 40%, TV 방송 외국인 투자금지, 광고서비스 30%	디지털 뉴스 미디어 26%, FM 라디오/뉴스 채널 49%
	전자 상거래	-	외국계 대형 소매기업의 경우 Bumiputera (현지 토착민) 지분 30% 이상 보유 필요	중소기업과의 협약을 조건으로 외투 100% 허용	-	소매업(총 자본금 1억 바트 이하) 50% 미만	자본금 250만 달러 미만의 소매거래업체 외투보유 금지, 택배 서비스 40%	B2C 전자상거래 외국인 투자 원칙적 금지
투자 심사	공통	-	외국인의 산업용 부동산 취득 시 연방당국의 승인 필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조정위원회 (BKPM) 면허 취득 필요	민감한 사업과 중요 국책사업의 경우 사전승인 필요	금융서비스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 외국인 투자에 승인 필요	-	
	통신 서비스	통신업체 12% 이상 지분 취득 시 IDA 승인 필요	50% 초과 지분 취득 혹은 1억 달러 초과 FDI의 경우 승인 필요	IPTV 컨소시엄의 통신부 승인 필요	통신 면허신청 시 5년간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2종/3종 통신서비스 면허 취득 필요	전기통신 분야 인수합병에 대한 의회 및 유관기관 승인 필요	외투 지분 49% 초과 시 정부 승인 필요
현지 법인 설립/등록 요건	시설기반 운영자의 경우 현지 법인 설립 필요	통신 서비스 외국인 투자 시 현지법인 설립 필요	컴퓨터 서비스 수행 시 현지 대표사무소 설립(합작운영) 필요	광고 및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 시 현지법인 설립 필요, 통신시장 합작형태만 허용	-	-	전자상거래, 데이터 교역, 웹 기반 마케팅 사업 수행 시 현지 등록 필요	

자료: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상세 문헌은 본 보고서 참고).

부표 2. 신남방지역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비교

항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
주요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0	Regulation No. 20 of 2016	Law on Network Information Security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Data Privacy Act of 2012	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포괄적 개인정보보호법	○	○	△	○	○	○	△
헌법상 권리 보장	○	○	X	○	X	○	○
국가 데이터보호 기관 (National Data Protection Authority)	○ 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ssion	○ Personal Data Protection Advisory Committee	X -	X -	○ 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ttee	○ National Privacy Commission	X -
개인정보 제공 동의(consent)	express consent	express consent (민감정보)	consent	explicit consent	explicit consent	express consent (민감정보)	express consent (민감정보)
민감정보의 법적 정의	X	○	X	X	○	○	○
기업의 데이터 보유 (data retention)	○	○	○	○	○	○	○
DPO(Data Protection Authority) 의무 규정	○	X	X	○	○	○	○
데이터 침해 통지	의무	△	△	○	○	○	○
	가이드 라인	○	X	○	○	○	○
주요 분야별 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이드라인</li> <li>· 통신</li> <li>· 부동산</li> <li>· 교육</li> <li>· 헬스케어</li> <li>· 사회서비스</li> <li>· 은행</li> <li>- 분야별 법</li> <li>· 금융</li> <li>· 헬스케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동강령</li> <li>· 항공</li> <li>· 은행 및 금융</li> <li>· 보험</li> <li>· 공공사업 (전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법</li> <li>· 통신</li> <li>· 은행 및 자본시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법</li> <li>· 은행 및 금융</li> <li>· 보험</li> <li>· 전자상거래</li> <li>· 정보기술</li> <li>· 통신</li> <li>· 미디어</li> <li>· 소비자 보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법</li> <li>· 은행 및 금융</li> <li>· 통신</li> </ul>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법</li> <li>· 전자결제</li> <li>- 가이드라인</li> <li>· 통신</li> <li>- 정책(안)</li> <li>· 전자상거래 등</li> </ul>

자료: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상세 문헌은 본 보고서 참고).